

심사보고서

충청북도 자연학습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충청북도 자연학습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84
----------	----

2022. 10. 21.(금)
정책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나. 제출일자 : 2022년 10월 5일

다. 회부일자 : 2022년 10월 12일

라. 상정일자 : 2022년 10월 17일

- 제40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2. 제안 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이남희 양성평등가족정책관)

가. 제안사유

- 「충청북도자연학습원 운영 및 위탁관리에 관한 조례」 제12조 및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따라 충청북도 자연학습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충청북도 자연학습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충청북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탁대상 : 충청북도 자연학습원
- 위탁기간 : 2023. 1. 1. ~ 2025. 12. 31. (3년)
- 위탁기관 : 청소년 활동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청소년 단체(법인)
※ 現) 위탁기관 : 학교법인 주성학원(2014. 1. 1~ 2022.12.31.) / 3차 재계약
- 위탁방법 : 공개모집을 통한 민간위탁
- 사업비 : 200백만원('22년 운영비 : 도비 100%) *연도별 변동 가능
- 주요 위탁사무
 - 충청북도 자연학습원 재산 관리
 - 충청북도 자연학습원 시설사용료 부과·징수
 - 충청북도 자연학습원의 공익적 기능에 부합하는 교육·훈련
 - 기타 자연학습원 관리·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무 및 위탁자가 정하는 사업 등

3. 검토보고 요지 (김대진 수석전문위원)

가. 제출배경

- 본 동의안은 「충청북도자연학습원 운영 및 위탁관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충청북도 자연학습원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한 민간위탁 운영을 추진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충청북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되었음.

나. 주요내용 검토

- 충청북도 자연학습원의 민간위탁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충청북도 사무위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따른 위탁 대상사무 기준에 적합한지를 검토하고, 제4조의2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충청북도 자연학습원은 청소년수련시설로써 청소년들의 다양한 수련 활동을 지원하고 안전한 수련활동을 위한 시설 관리·운영과 공익적 기능에 부합하는 교육·훈련 등의 사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적극적인 홍보와 시설 관리를 통해 이용율을 제고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여야 하므로 「충청북도 사무위 민간위탁 조례」 제4조제2호에 따른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크게 요구되는 사무’에 해당된다 할 수 있음.
- 특히, 청소년 대상 특화프로그램 개발·운영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청소년 분야 전문 지식과 경험이 요구되는바,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 위탁 조례」 제4조제3호에 따른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요구되는 사무’에 해당된다 할 수 있으므로 전문 지식과 다양한 경험을 축적한 민간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충청북도자연학습원 운영 및 위탁관리에 관한 조례」 제12조는 학습원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청소년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고, 2001년부터 민간위탁으로 관리·운영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민간위탁의 타당성이 인정됨.

다. 종합 검토의견

- 충청북도 자연학습원의 민간위탁 운영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며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크게 요구되는 사무’,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요구되는 사무’에 해당하는바 민간위탁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다만, 담당부서에서는 수탁기관 공모 선정시 공정한 절차를 통해 전문성 있는 단체 또는 법인이 선정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향후 수탁기관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으로 위탁 사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점검해야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 론 요 지 : “생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요 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자연학습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충청북도 자연학습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84

제출연월일 : 2022년 10월 5일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1. 제안사유

- 충청북도 자연학습원 운영 위탁기간 종료('22.12.31.) 시점 도래
- 「충청북도자연학습원 운영 및 위탁관리에 관한 조례」 제12조 및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등에 따라 충청북도자연학습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충청북도 자연학습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도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위탁대상 : 충청북도 자연학습원
- 위탁기간 : 2023. 1. 1. ~ 2025. 12. 31.(3년)
- 위탁기관 : 청소년 활동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청소년 단체(법인)
※ 現) 위탁기관 : 학교법인 주성학원(2014. 1. 1~ 2022.12.31.) / 3차 재계약
- 위탁방법 : 공개모집을 통한 민간위탁
- 사업비 : 200백만원('22년 운영비 : 도비 100%) * 연도별 변동 가능
- 위탁주요사무
 - 충청북도자연학습원 재산 관리
 - 충청북도자연학습원 시설사용료 부과·징수
 - 충청북도자연학습원의 공익적 기능에 부합하는 교육·훈련
 - 기타 자연학습원 관리·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무 및 위탁자가 정하는 사업 등

3. 참고사항

가. 충청북도 자연학습원 운영 현황

- 재 개 원 : 2014. 3. 6. (재건축 '12. 10. ~ '13. 12.)
- 소 재 지 : 충북 괴산군 청천면 화양로 1314-12(송면리)
- 시설현황 : 대지면적 28,783㎡, 연면적 6,013.36㎡(10동, 지하2층~지상3층)
- 수용능력 : 480명 / 1일 (숙박350명(학생320, 지도자30) / 야영130)
- 운영인력 : 5명 (원장1, 부원장1, 직원3)
- 그간 위탁현황
 - 1~3차('14. 1. 1. ~ '22. 12. 31.) / 학교법인 주성학원

나. 관계법령 : 별첨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 「충청북도자연학습원 운영 및 위탁관리에 관한 조례」 제12조
(관리·운영의 위탁)
-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충청북도 자연학습원 운영 민간위탁 추진 계획

I 추진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 「충청북도 자연학습원 운영 및 위탁관리에 관한 조례」 제12조(관리운영의 위탁)
-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II 위탁개요

- 위탁대상 : 충청북도자연학습원 운영 전반
- 위탁기간 : 2023. 1. 1. ~ 2025. 12. 31.(3년)
- 위탁방법 : 공개모집
- 운영비 : 200백만원 ('22년 운영비 : 도비100%) ※연도별 변동가능
- 위탁사무
 - 충청북도 자연학습원 재산 관리
 - 충청북도 자연학습원 시설사용료 부과·징수
 - 충청북도 자연학습원의 공익적 기능에 부합하는 교육·훈련
 - 기타 자연학습원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무 및 위탁자가 정하는 사업 등

【 충청북도 자연학습원 현황 】

- ❖ 재 개 원 : 2014. 3. 6. (재건축 '12. 10. ~ '13. 12.)
- ❖ 소 재 지 : 충북 괴산군 청천면 화양로 1314-12(송면리)
- ❖ 시설현황 : 대지면적 28,783㎡, 연면적 6,013.36㎡(10동, 지하2층~지상3층)
- ❖ 수용능력 : 480명 / 1일 (숙박350명 (학생320, 지도자30) / 야영130)
- ❖ 운영인력 : 5명 (원장1, 부원장1, 직원3)
- ❖ 그간 위탁현황 : 1~3차 ('14. 1. 1.~'22. 12. 31.) / 3년 주기 / 학교법인 주성학원

III

추진절차 및 계획

① 추진계획	• 추진계획 수립 및 보고	'22. 10월
② 의회동의	• 민간위탁 의회동의	'22. 10월
③ 수탁방법	• 수탁기관 선정 - (방 법) 공개모집 [공고15일이상, 도 홈페이지 공고] - (자 격) 청소년 활동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단체(법인)	'22. 11월
④ 수탁심사	•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개최 - (구 성) 6~9명 정도 - (심 사) 전문성, 사업실적, 사업계획 등 - (결 정) 심사를 통한 고득점자 선정	'22. 11월
⑤ 협약공증	• 협약체결 및 공증	'22. 12월
⑥ 사무개시	• 위·수탁 사무개시	'23. 1. 1.

IV

세부추진계획

1 의회보고

- 동의시기 : '22. 10월 임시회 중
- 동의근거 :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5조 1항

제5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민간위탁을 하려는 경우 국가 위임사무는 그 위임 사무 소관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충청북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수탁기관 모집공고

- 공고기간 : '22. 11월 중 (15일 간)
- 공고방법 : 공개모집(도 홈페이지 공개)
- 선정방법 : 위탁기간 동안 사업실적, 운영성과 등을 고려한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 심의·결정(고득점자 선정)

○ 신청자격

- 최근 3년 이상 청소년 육성, 청소년 활동, 청소년 복지, 청소년보호 관련 업무에 대한 실적이 있는 공고일 현재 도내에 주된 사무소(지부)를 둔 청소년 단체 및 법인
-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청소년지도사를 두고 있어야 함

○ 위탁조건

- 관계법령·조례 등을 준수하고 협약내용 성실히 수행
- 위탁시설의 용도를 임의 변경 사용 금지
- 위·수탁 협약서 공증은 협약체결 후 즉시 수탁기관이 공증하여 제출 등

3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개최

○ 개최시기 : '22. 11월 ※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준용

- 구성인원 : 9명 이내(관계공무원 및 해당분야 전문가)
※ 당연직 3 (기획관리실장, 행정국장, 업무주관 실·국장), 기타(전문가) 위촉
- 심사항목 : 사업실적, 사업수행능력, 사업계획 및 예산책정 등

○ 계획설명 : 신청기관 사업계획 설명

○ 수탁자 선정 : 사업실적, 운영성과 등 고려하여 최고득점자 선정

- 1개 법인(단체)이 신청 시 재공고 추진(2개이상 신청시 심의)
- 단, 추가 공모에도 1개 법인(단체)만이 신청할 경우, 그 법인(단체)을 대상으로 심의 진행하고, 2개 이상의 법인(단체)이 신청하였더라도 위원회에서 전부 부적격 결정 시 재공모
※ 1개 법인이 신청, 수탁기관 선정 평가시 위원별 합산 평균이 70점 이상이면 선정

4 협약체결 및 공증

○ 체결시기 : '22. 12월

○ 내 용 : 협약체결 및 협약 내용 공증, 업무 인계·인수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신설 2010. 2. 4., 2015. 1. 20., 2021. 4. 20.>

□ 충청북도자연학습원 운영 및 위탁관리에 관한 조례

제12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도지사는 학습원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리·운영의 일부나 전부를 청소년단체 등(이하 "수탁관리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 7. 11, 2009. 5. 8, 2016. 1. 1>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운영을 위탁할 경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 7. 11, 2009. 5. 8, 2016. 1. 1>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탁기간을 두 번 이상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관리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연장할 수 있다.<신설 2016. 1. 1>

④ 수탁관리자는 위탁받은 학습원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른 법인이나 단체, 개인에게 재위탁하거나 대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8. 7. 11, 2009. 5. 8, 2016. 1. 1>

⑤ 도지사는 학습원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때에는 운영과 시설개보수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8. 7. 11, 2009. 5. 8, 2016. 1. 1>

□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도지사는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도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없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12.18.>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크게 요구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구되는 사무
4. 그 밖에 도민생활과 직결되는 단순 행정사무

제5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민간위탁을 하려는 경우 국가 위임사무는 그 위임사무 소관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충청북도의회(이하"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12.18.>

충청북도 자연학습원 운영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보고

충청북도 자연학습원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민간 위탁 추진에 따른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제4조의2

□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의견

검 토 항 목	검 토 의 견	비고
①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가능성	○ 충청북도 자연학습원의 전문성 확보 및 체계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관련 업무 전문성을 갖춘 청소년 활동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단체 및 법인에서 운영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됨	
②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지도사를 배치한 청소년 관련 법인(단체)에 민간위탁을 통한 운영이 적정하다고 판단됨	
③ 경제적 효율성	○ 수요대비 적정한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여 관리·운영할 예정이며, 기존 행정재산을 최대한 활용하여 효율적으로 운영 예정	
④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청소년 분야의 전문지식, 인력, 네트워크 등을 활용하여 도내 청소년 및 도민들을 위한 사업 전문화	
⑤ 성과 측정의 용이성	○ 매년 사업계획에 기반하여 목표 대비 실적평가 등을 통해 사업성과 측정	
⑥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도는 수탁기관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이 있으며, 위·수탁 체결을 통한 운영방식 및 사업계획 관리를 통해 투명성 제고 *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5조(지휘·감독)	
⑦ 민간의 서비스 공급시장 여건	○ 청소년 수련시설 특화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도내 유일 자연형 수련시설 종합적인 관리를 위해 민간위탁을 통한 운영이 적정하다고 판단됨	

□ 검토결과 : 적정

- 충청북도 자연학습원은 「충청북도 자연학습원 운영 및 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제12조(관리·운영의 위탁)에 근거한 수련시설로,
- 도내 청소년을 위한 특화프로그램(환경교육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청소년 분야 전문지식과 자격요건을 갖춘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업무의 효율성 제고 및 관련 법인(단체)의 자원연계 등을 활용한 경제적 효과증대를 기대할 수 있음.

⇒ **사업내용의 공공적 성격이 명확하고, 민간의 전문인력을 활용하는 것이 체계적인 사업추진 및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므로 민간위탁으로 운영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됨**

□ 향후 추진계획

- 민간위탁 동의안 도의회 제출·심의 : '22. 10월
- 수탁기관 모집 공고 : '22. 11월(15일간)
-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의 : '22. 11월
- 협약 체결 및 공증 : '22. 12월
- 위·수탁사무 개시 : '23. 1. 1.